

#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공고

## 1 사업목적

- 베트남 현지 산업부문 업종별 벤치마크 및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을 통한 베트남 에너지효율 향상 및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 2 사업개요

- (사업명) 베트남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 (사업예산) 150,000천원(VAT 포함)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베트남 현지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산업부문 2개 업종 벤치마크 개발 및 5개 업종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등

구분	주요내용
벤치마크 (Benchmark)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베트남에서 시행 중인 벤치마크 적용 대상 중 목표시한이 도래하는 2개 업종에 대해 벤치마크 개발</li> <li>○ 대상 업종 : 철강, 제지</li> <li>○ 업종별 주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에서 시행 중인 기존 벤치마크 방법론 검토 및 해당 업종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추가자료 수집 등</li> <li>- 벤치마크 계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방안 마련</li> <li>- 기초자료 엑셀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에너지 원단위 분석</li> <li>-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벤치마크 계수 산정</li> <li>- 벤치마크 계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li> <li>- 벤치마크 시행을 통한 에너지절감 잠재량 평가</li> <li>- 베트남 벤치마크 관련 규정 검토 및 업데이트</li> </ul> </li> </ul>
기술가이드라인 (Technical Guideline)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업종별 기술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업장의 에너지효율개선 방안 수립 및 이행에 기여</li> <li>○ 대상업종 : 철강, 제지 등 베트남 에너지다소비산업 중 5개 업종 선정 예정(향후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5개 대상업종 최종 결정)</li> </ul>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주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가이드라인 작성기준 마련</li> <li>- 산업 개요 및 국내외 동향 조사</li> <li>- 공정, 설비특성 및 에너지흐름분석</li> <li>-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배출특성 파악</li> <li>-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기술분류체계 마련</li> <li>-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가이드라인 개발</li> </ul> </li> </ul>
기타 지원 (현장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치마크 및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각 과업별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준비 지원 및 참석(베트남 현지 출장)</li> <li>* 베트남 출장 횟수는 과업 추진 현황 및 현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베트남 산업체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현장 지원(필요시)</li> </ul>

\* 과업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영문 및 국문 버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현지와의 의사소통은 영어를 원칙으로 함

## 3 추진절차

절차	주요내용	비고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공고를 통한 제안서 접수(1.17~1.31, 2주)	■마감일 17:00까지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지침 준용
↓		
사업 협약	■선정된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협약서 작성
↓		
사업계획 제출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수행	■사업내용 참조	■사업 수행중 수시 협의
↓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최종보고서, 정산

####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평가표 및 제안서에 따라 사업자의 전문성, 이해도 등 평가·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85점(100점 만점을 기준) 이상인 업체를 선정
    - \* 85점 이상을 획득한 2개 이상 업체가 동점을 획득할 경우 평가표 III 사업 추진전략 고득점자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
    - \*\* 평가 방법에 대한 기타사항은 공단 제안서평가지침을 준용
- (협약체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공단과 협약 체결
  - \* 협약서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주관기관 역할, 사업비 지급·정산, 사업 결과보고 등

#### 5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 서식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4년 1월 31일(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E-mail([limbm3@energy.or.kr](mailto:limbm3@energy.or.kr)) 제출
- 문의처 : 국제협력실 베트남사업 담당자(010-5424-4330)

##### 나. 제안서 목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목차 (제시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함)

목 차	작성 방법
I. 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공동수급체 구성 시 이를 포함할 것)
2.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직 및 인력현황
3. 인력 투입 및 배치	- 협약 수행내용을 고려한 투입 인력 배치
II. 사업수행계획	

목 차	작성 방법
1. 협약수행 방법	- 본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 공동수급체 간 상호협력 방안
2. 협약수행 능력	- 금번 협약과 관련된 업체의 특유 기술·지식 능력
3. 협약수행 일정 및 수행내용	- 일정표 및 일정별 협약 수행내용
III.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은 사업내용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1. 벤치마크 개발 지원	- 베트남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 - 벤치마크 계수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검증 방안 -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벤치마크 계수 선정 - 업종별 벤치마크 계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벤치마크 시행을 통한 에너지절감 잠재량 평가 - 베트남 벤치마크 관련 규정 검토 및 업데이트
2.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업종별 기술가이드라인 개발계획 - 업종별 산업 개요 및 국내외 동향 조사 - 업종별 공정, 설비특성 및 에너지흐름분석 - 업종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배출특성 -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기술분류체계 마련 - 업종별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 베트남 산업체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현장 지원
3. 기타 지원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준비 지원 및 참석

-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협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기관은 그로 인한 공단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6 유의 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협약사업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협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협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수행기관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붙임1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표**

평가일자 : 2024. . . .

협약명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향상 협력사업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I. 업체 일반사항 (20)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계량평가기준에 의함 [별지 참조]					10	
	②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10	9	8	7	6	10	
II. 사업수행계획 (30)	① 협약수행방법의 타당성	10	9	8	7	6	10	
	②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10	9	8	7	6	10	
	③ 협약수행일정의 적절성	10	9	8	7	6	10	
III. 사업추진전략 (50)	① 벤치마크 개발 지원	20	18	16	14	12	20	
	②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20	18	16	14	12	20	
	③ 기타 지원(현장지원 등)	10	9	8	7	6	10	
합 계							100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별지] 계량평가기준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창업기업<sup>1)</sup>, 사회적 약자기업<sup>2)</sup> 및 정책지원기업<sup>3)</sup>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1)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명세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2) 사회적 약자기업 : 하기 표에 따름

구분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3) 정책지원기업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제안서				
협약명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향상 협력사업			
수행자 (대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사업관리자 (PM)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부서		전화	
	직위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4. . ~ 2025. . ( 개월)			
참여인력	내부	인	외부	인
	성명		직위	
실무담당자	부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기관명 (참여지분율%)			
<p>귀 공단의 사업공고에 따라 상기 협약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관리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관장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p>				

##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공동수급 참여지분율(%)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개별로 작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구분	성명 (연령)	참여기간 (개월)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명	유사분야 참여실적 (년)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 ※ 참여기간은 본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간만을 기재함
- ※ 기술등급은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세	해당분야근무경력(년)		
본과업 참여임무	부문	자격증		
본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수행인력 구성방법”의 자격사항 부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단위 : 천원)

계(협)약명	계(협)약기간	계(협)약금액	발주처	비고

- ※ 사업 완료기준으로 연도순으로 기재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 실적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함
- ※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3년 이내를 의미함

##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용	제 출 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 약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